

## 「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 기간 운영 안내」

- 관세청은 '20.7.1일부터 중소기업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(대상검사) ①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, ②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,  
③수출화물 적재지 검사

(대상비용) ①운송료, ②상·하차료, ③적출·입료

- 올해부터는 검사비용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,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미 신청분에 대한 신청기한 연장 등 특별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,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(4.1.~ 4.30.까지)

- (신청기한 연장)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→ 미 신청 건 일괄신청 허용
- 신청허용 대상 : '20.11.1일 이후 검사 완료된 검사비용 미 신청 건

- 제출서류

- ① 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
- ②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

※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(다만,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부두운영사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)

- 신청방법

- 관세청 유니패스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에서 조회 및 신청
  - unipass 로그인>> 전자신고>> 신고서작성>> 공통(검사비용/임시개청)>> 대상목록 조회>>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

※ (상담전화)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

☎ 02-2107-2529, 2531, 2533, 2534, 2537, 2538, 2539, 2544, 2545